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7
----------	-----

2024. 9.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8. 18. 김진경 의원 등 9명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김진경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의회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의 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 관련 규정을 삭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의장과 부의장 관련 규정을 삭제 (안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가. 개정 취지

-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회의규칙에 규정된 일부 조문을 기본 조례안에 반영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규칙안임.

나. 검토내용

- 그 동안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 및 선거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반영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회의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등록), 제3조(의석배정), 제4조(개회식), 제5조(선서) 규정을 삭제하여 <기본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22조, 제8조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고
 - 안 제2장(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하여 <기본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0조, 제14조, 제13조, 제15조로 일부 수정하거나 재기재한 것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

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의규칙에 규정된 조문을 <기본 조례안>에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재기재함에 따라 정비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07호

제안일자: 2024. 9. 3.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의장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신설됨에 따라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함

2. 수정주요내용

- 별지 서식을 삭제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u>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p>	<삭 제>
<p>제3조(의석배정) ① <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의석을 정한다.</u></p> <p>② <u>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u></p>	<삭 제>
<p>제4조(개회식) <u>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u></p>	<삭 제>
<p>제5조(선서) <u>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u></p> <p><u>"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u></p>	<삭 제>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삭 제>

제6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의

<삭 제>

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
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
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
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
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
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
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
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
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이미지첨부”표
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
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
179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의장 후보자 등록) ①

<삭 제>

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
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
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
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
권을 가진다.

제6조의3(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삭 제>

계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
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
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
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
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

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천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의장 후보자 정견발표)

<삭 제>

①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삭 제>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삭 제>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의장, 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삭 제>

[별지 서식]

<삭 제>

후보자 등록 신청서(제6조의2 제1항 관련)

- 1. 선거명 :
- 2. 소속정당명 :
- 3. 선거구명 :
- 4. 후보자성명 : (한자 :)
- 5. 생년월일 :
- 6. 주소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 ○ 대 강남구의회
○반기 ○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 ○ ○ (인)

강남구 의회사무국 귀중

- 1. 선거명에는 의정선거를 기재합니다.
- 2.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기재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